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23

발의연월일: 2024. 7. 2.

발 의 자:이기헌・윤건영・박해철

박민규 • 김남근 • 김성회

복기왕 • 김원이 • 박상혁

이용우 · 강준현 · 조계원

박홍근 • 박희승 • 김 현

윤종군 · 안태준 의원

(1791)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정보원이 국내에서 내란죄·외환죄 등 안보범죄에 관련된 정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을 신설하였음. 그런데 이러한 '조사권'은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바, 수사권은 형사 절차에 적용되는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및 영장주의가 엄격히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러한 헌법 원칙의 적용 없이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조사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임.

또한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이 안보범죄에 관한 정보 업무 수행을 위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 사실의 조회·확인,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요구 역시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게 허용하고 있는 권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공수사권이 없는 국가정보원이 이런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형사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더하여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안보범죄에 관한 정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급 수사기관과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정보원은 막대한 예산과 안보범죄에 관한 정보를 독점하면서 그 중 입맞에 맞는 사건정보를 선별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이 사실상 대공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있음.

한편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은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국가정보원이 정부의 인사검증에 개입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러나 「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 규정은 법률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위법한 규정이고, 국가정보원법상 국가정보원의 직무에도 해당할 여지가 없음.

이에 안보범죄에 관한 국가정보원의 조사권과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폐지하고, 국가정보원이 안보범죄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의 협력을 의무화함으로써 대공수사권 이관을 실효적으로 안착되도록 하고, 또한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는 신원조회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정부인사 개입을 차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정보원이 내란죄·외환죄·국가보안법위반죄·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등 안보범죄에 관한 정보 업무 수행을 위해 다른 국가기관 에 대해 사실의 조회·확인,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권한을 삭제함(안 제5조제1항 삭제).
- 나. 국가정보원이 안보범죄에 관련된 정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을 삭제함(안 제5조제2항 및 제4항삭제).
- 다. 국가정보원이 안보범죄에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대공수사 권을 보유한 수사기관에게 범죄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력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5조)
- 라.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신원조회를 위하여 활용하는 것을 금 지함(안 제4조 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정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취득한 정보를 신원조사, 기타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사와 관련된 절차에 활용할 수 없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수사기관과의 공조체계 및 협력) 국정원은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취득한 범죄정보를 각급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각급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개 혅 행 정 아 제4조(직무) ① ~ ④ (생 략) 제4조(직무) ① ~ ④ (현행과 같 음) ⑤ 국정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 <신 설> 문하고 취득한 정보를 신원조 회,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사에 관련된 절차에 활용할 수 없다. 제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제5조(수사기관과의 공조체계 및 요청) ① 원장은 직무 수행과 협력) 국정원은 제4조제1항제1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 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관한 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취득한 는 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 범죄정보를 각급 수사기관에 라 한다)에 대하여 사실의 조 제공하는 등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각급 수사기 회 · 확인, 자료의 제출 등 필요 한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력하여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야 하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 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직원은 제4조제1항제1호나 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문서열람·시료채취·자료제

출 요구 및 진술요청 등의 방 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 ③ 국정원은 제4조제1항제1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관한 직 무수행과 관련하여 각급 수사 기관과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 하고,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 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④ 직원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 권한을 남 용하여서는 아니된다.